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68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이수진・임미애・이기헌

김동아 · 최기상 · 민병덕

이건태 • 박홍배 • 윤종오

장철민 • 추미애 • 김태년

정성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노인복지시설,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, 의료기관에 종 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 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.

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 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	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
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	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	
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	
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	
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	
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	3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
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	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
의 의료기관의 장	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종
	<u>사자</u>
4. ~ 22. (생 략)	4. ~ 2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